

검찰청 관인 관리 규칙 일부개정령안

검찰청 관인 관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명 “검찰청 관인 관리 규칙”을 “공소청 관인 관리 규칙”으로 한다.

제1조 중 “검찰청”을 “공소청, 광역공소청, 지방공소청(이하 “각급 공소청”이라 한다) 및 지청”으로 한다.

제2조제1항 중 “검찰청”을 “공소청 및 지청”으로 한다.

제4조제1항 중 “검찰청은”을 “공소청 및 지청은”으로, “검찰청의”를 “공소청의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검찰청”을 “공소청 및 지청”으로 한다.

제5조제1항 중 “검찰청”을 “각급 공소청 및 지청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검찰청”을 “공소청 및 지청”으로 한다.

제6조제3항 및 제4항 중 “검찰청”을 각각 “각급 공소청 및 지청”으로 한다.

제7조 중 “검찰청”을 “공소청 및 지청”으로 한다.

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검찰청”을 “각급 공소청 및 지청”으로 한다.

별표 1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기 관 명	한 변의 길이
검 찰 총 장	3
광역공소청장	2.7
지방공소청장	2.7
지방공소청 지청장	2.4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검찰청 관인 관리 규칙</u>	<u>공소청 관인 관리 규칙</u>
제1조(목적) 이 규칙은 「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」 제34조제2항에 따라 <u>검찰청</u> 이 사용하는 관인(官印)에 대한 규격 및 등록 등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	제1조(목적) ----- ----- ----- <u>공소청</u> , <u>광역공소청</u> , <u>지방공소청</u> (이하 “ <u>각급 공소청</u> ”이라 한다) 및 <u>지청</u> ----- -----.
제2조(규격) ① <u>각급 검찰청</u> 의 관인은 정사각형으로 하며, 그 규격은 별표 1과 같다.	제2조(규격) ① -- <u>공소청</u> 및 <u>지청</u> ----- -----.
② (생략)	② (현행과 같음)
제4조(관인의 등록) ① <u>각급 검찰청</u> 은 관인을 해당 <u>검찰청</u> 의 관인대장에 등록하여야 한다.	제4조(관인의 등록) ① --- <u>공소청</u> 및 <u>지청</u> 은 -- <u>공소청</u> 의 ----- -----.
② 제1항에 따라 <u>각급 검찰청</u> 에서 관인을 등록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관인대장에 그 인영(印影)을 등록한다.	② ----- <u>공소청</u> 및 <u>지청</u> ----- ----- -----.
③ (생략)	③ (현행과 같음)
제5조(전자이미지관인의 등록) ① 전자이미지관인을 사용하려는	제5조(전자이미지관인의 등록) ① -----

검찰청은 별지 제2호서식의 전자이미지관인대장에 이를 등록한 후 컴퓨터 파일에 등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.

② 각급 검찰청의 장은 전자이미지관인을 위조하거나 부정사용하지 못하도록 필요한 안전장치를 하여야 한다.

③·④ (생략)

제6조(재등록 및 폐기) ①·② (생략)

③ 전자이미지관인을 사용하는 검찰청은 관인을 재등록한 경우에는 즉시 사용 중인 전자이미지관인을 삭제하고, 재등록한 관인의 인영을 전자이미지관인으로 전환하여 사용하여야 한다.

④ 전자이미지관인을 사용하는 검찰청은 사용 중인 전자이미지관인의 인영의 원형이 제대로 표시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전자이미지관인을 재등록하여 사용하여야 한다.

제7조(특수업무처리용 관인) 각급 검찰청에서 유가증권발행 또는

각급 공소청 및 지청-----

-----.

② --- 공소청 및 지청-----

-----.

③·④ (현행과 같음)

제6조(재등록 및 폐기) ①·② (현행과 같음)

③ -----
각급 공소청 및 지청-----

-----.

④ -----
각급 공소청 및 지청-----

-----.

제7조(특수업무처리용 관인) ---
공소청 및 지청-----

민원업무 등 특수업무처리용 관
인을 따로 사용하려는 경우에
관하여는 제4조부터 제6조까지
및 제8조를 준용한다.

제8조(공고) 관인 또는 전자이미
지 관인을 등록 또는 재등록하거
나 폐기하였을 때에는 해당 검
찰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
보에 공고하여야 한다.

- 1. ~ 4. (생략)

-----.

제8조(공고) -----

----- 각
급 공소청 및 지청-----
-----.

- 1. ~ 4. (현행과 같음)